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해조류 산업 육성을 위해 외해양식업 면허의 종류에 해조류를 양식하는 수하식양식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⑦ 외해양식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가두리양식업: 수중에 뜬·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어류를 양식하는 사업
2. 수하식양식업: 수중에 대·지주·뜬·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면허 양식업의 종류) ① ~ ⑥ (생 략) ⑦ <u>외해양식업의 종류는 가두리 양식업(수중에 뜬·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어류를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)으로 한다.</u> ⑧ (생 략)	제9조(면허 양식업의 종류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<u>외해양식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1. <u>가두리양식업: 수중에 뜬·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어류를 양식하는 사업</u> 2. <u>수하식양식업: 수중에 대·지주·뜬·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</u> ⑧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614